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3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구감소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2

I. 개요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3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6. 7. 30.
-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정주 여건 및 인구의 고령화로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적은 인구에 의한 소비와 생산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그에 따른 복지인프라의 부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구감소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비용 지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후단 및 제42조의3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 -----,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 ----- ----- -----.

있다. <후단 신설> ② . ③ (생략)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의미함¹⁾.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의 시·군·구를 지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목록 >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비중 확대²⁾로 인해 돌봄·의료·소득보장 등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생산 기반 및 지방세입의 위축으로 자체 재정여력은 취약하여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인구감소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복지수요가 큰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복지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의료·돌봄 등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2024년도 기준 청년인구(20~30대) 비율은 전국 평균은 24.6%인데, 인구감소지역은 15.5%이고, 비인구감소지역은 25.5%임. 2024년도 기준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전국 평균 20%인데, 인구감소지역은 35%이고, 비인구감소지역은 18.5%임. 하혜영·류영아,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III: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서울: 국회미래연구원, 2025), 21~22쪽.

□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8조(생활환경·경관의 개선)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 및 편의 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재난·재해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운영 노력 등이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구감소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인구감소지역(농어촌 등)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한 정주 여건(교통, 주거, 교육 등)으로 인해 종사자 구인난을 겪고 있어 시설 설치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종사자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 거주지역으로 인하여 적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간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현황('25년 말 기준)
-------------	--

구분	국가·지자체 설치·운영 시설		
	소계	직영	위탁
계	4,291	405	3,886
노인	1,081	74	1,007
아동	1,788	103	1,685
장애인	978	192	786
정신보건	9	3	6
노숙인	38	0	38
지역 자활센터	9	9	0
사회 복지관	388	24	364

※ 경로당·노인교실 제외